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48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5년 수입·지출 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정책사업(재무활동), 678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
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체육진흥기금	14,290	14,968	678	4.7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987	10,987	-	-
시민생활체육 진흥	1,196	1,196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097	2,775	678	32.3
보전지출	2,097	2,775	678	32.3
여유자금 예치	2,097	2,775	678	32.3
행정운영경비	10	10	-	-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4,290	14,968
이자수입	2,337	2,337
전입금	7,388	7,388
예치금회수	4,565	5,243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4,290	14,968
비용자성사업비	12,183	12,183
기본경비	10	10
여유자금예치	2,097	2,775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Ⅲ. 검토의견¹⁾

- 서울특별시는 지난 2000년,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6억 7,8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에도 6억 7,800만원을 여유자금예치로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은 당초 지출계획(20억 9,700만원)보다 32.3%, 6억 7,800만원을 증액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³⁾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3)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

-
2.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 3.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 4.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
 5. 전국체육대회,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
 6.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
 7.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